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송도호 위원입니다.

지난 4월 3일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

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 
사항을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 
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구의  
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,

운영자 및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